의안번호	2202157
의 뢰 인	윤영석의원
회 답 일	2024.7.25
추계번호	24B2230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현황 분석 2.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수요전망 3. 광역철도 건설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4. 노선명, 노선 연장, 기점·종점, 정거장 위치, 차량기지 등 개략적인 노선망 5.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6.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7.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8.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지진 대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제9조에 따른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2. 사업 구역 3. 자금조달계획 4. 건설사업 시행기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12조 (주변지역개발사업)	시·도지사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변경 절차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3조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둠(제1항)	의무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4조 (재정 지원)	국가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5조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6조 (민간자본 유치)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7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10	안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1]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1) 제11조(시설 기준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미대상: 선언적 규정
2	안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4	안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5	안 제13조(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	
6	안 제14조(재정 지원)	
7	안 제15조(부담금 등의 감면)	
8	안 제16조(민간자본 유치)	
9	안 제17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10	안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	

2. 상세사유

❑ 제정안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 신설,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사업 및 재정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국토교통부는 현재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사전타당성조사[2)]를 진행하고 있어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지역, 시·종착점 등이 미확정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추진단(안 제13조) 설치에 따른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

2) *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사업현황
- 기본계획 수립 전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7)에 반영되어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중 (2024년 연말 완료예정)
※광역철도 지정→**사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기본계획수립→기본·실시설계→실시계획→착공→개통
* 사업개요(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기준)
- 사업범위: 경전선 진영역~KTX 울산역 복선전철, 51.4㎞
- 총사업비: 1조 9,354억원

계가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가 유사사례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비용과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 추진단 운영비를 추산한 결과는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안 제10조)·주변지역 개발사업(안 제12조)·재정지원(안 제14조)·민간자본 유치(안 제16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안 제17조)

○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시·도지사가 광역철도역사예정지역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범위의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변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국가가 주변지역예정지역 개발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런데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어서 실시계획 수립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변경 절차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현재 동남권순환광역철도 노선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특정하기가 곤란한 점, 해당 지역별 개발사업 및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이 불확정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부담금 등의 감면(안 제15조)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됨

○ 그런데 현재 동 사업지역별로 부과될 부담금·점용료·사용료 등의 규모, 감면율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세외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특례(안 제20조)

○ 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될 때에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현재 동 사업 시행 지역 내 체육시설 설치계획, 지원규모 등 추계에 필요한 기초정보가 부재하여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Ⅳ.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철도건설 기본계획, 노선 및 시·종착점 등이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의 추계 결과는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이현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 관련 재정소요 추계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1.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관련 기본계획 수립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경기도 광명부터 수색차량기지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산업"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음

○ 개요: 경기도 광명, 용산,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23.6km)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3년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산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실시되고 있고(26억 9,300만원), 2025년 착공~2030년 완공목표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총 23.6km 구간에 대하여 26억 9,300만원이 소요되며, 연장(km)당 평균 1.1억원으로 나타남

[유사사례 사업 현황]

사업명	연 장(km)	연구용역 사업비(백만원)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3.6	2,693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및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안 제13조)

❑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 운영비는 국토교통부 추산결과 매년 3억원 규모로 예상

○ 국토교통부가 유사사례(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를 참고하여 운영비를 추산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 운영비용 추정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1년	2년	3년	4년	5년
합계	3.0	3.1	3.2	3.4	3.5
일반수용비	0.4	0.4	0.5	0.5	0.5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0.1	0.1	0.1	0.1	0.1
특근 매식비	0.1	0.1	0.1	0.1	0.1
임차료	0.8	0.8	0.9	0.9	0.9
부서운영비	0.0	0.0	0.0	0.0	0.0
국내여비	0.9	0.9	1.0	1.0	1.0
국외여비	0.1	0.1	0.1	0.1	0.1
사업추진비	0.3	0.3	0.3	0.3	0.3
관서 업무추진비	0.2	0.2	0.2	0.3	0.3
직책수행경비	0.2	0.2	0.2	0.2	0.2

주: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하므로 인건비는 미발생할 것으로 예상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